

조선 초기 유학의 여성인식*

– 여성 범주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숙인**

- I. 머리말
- II. 조선 초기 사회와 유학의 역할
- III. 부부관계의 제도화와 유학
- IV. 여성 정욕(情欲)의 제도화와 유학

- IV. 조선 초기 여성인식의 사상사적 의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I. 머리말

한국 여성인식의 역사에서 조선 초기 7~80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는 유학¹⁾의 언어로 여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면서, 유학의 이념으로 여성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졌던 때이다. 여성의 범주를 특정한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이론화한 유학은 여타 사상·종교·문화의 그것과 대체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이 유학은 한국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유학과 여성의 전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조선 초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A00034).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동양철학 전공(confemi@aks.ac.kr).

1)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유학은 주자학이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법전 및 그 합리화의 전거로 인용된 유학은 주자학에 한정되기보다 유학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 주자학은 물론 선진 유학 및 한당 유학 그리고 유교 경전 오경(五經) 등이 두루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기는 한국여성의 삶과 생각을 푸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 범주가 한국의 지배 사상에서 어떻게 체계화되는가를 조선 초기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는 데 있다. 국가 및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방법들에는 그 시대의 과제와 지향이 응축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시대적 과제가 부국강병과 사회통합이었다면 그 방법은 왕권 강화와 법·제도로서 모색되었다. 여기서 성의 범주는 가부장권 강화의 맥락에서 사회통합의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었고, 그것은 윤리·도덕의 기능보다 더 강력하면서 더 빠른 효과를 보장하는 법·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여성 인식의 조선 초기적 특성은 여성 범주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초기 여성 범주의 제도화를 이끌어간 철학 및 이념은 유학이다. 그것은 가부장적 질서 개념을 유학 이론을 통해 합법화하거나, 여성 인식의 유학적 방식을 경전의 권위로 전범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의 건국 주체들은 통치이념이 된 유학으로 일상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유학적 세계이해에 기초한 남녀관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여성 범주 제도화의 큰 가닥은 ‘부부관계’의 정립과 ‘남녀관계’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부부’와 ‘남녀’는 둘 다 남성과 여성은 쌍으로 한 용어이지만, 그 사용의 범주는 다르다. 그것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즐겨 인용한 『주역』의 「서괘(序卦)」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인간 및 사회관계는 자연으로부터 파생되는데, 천지(天地)→만물(萬物)→남녀(男女)→부부(夫婦)→부자(父子)→군신(君臣)→상하(上下)²⁾의 순서로 전개된다. 여기서 볼 때 ‘부부’가 사회적 단위에 해당된다면 ‘남녀’는 생물학적 단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제도화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면, ‘남녀관계’의 제도화에는 여성 색슈얼리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여성 범주의 제도화는 건국 후 7~8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세상에 공식 선포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기는 태조 1년(1392)에서 예종 1년(1469)까지이고, 그 결과물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그 후 『경국대전』은 성종(1469~1494) 연간에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쳐 현본 형태로 공포되었다. 즉 여성 인식의

2) 『周易』, 「序卦」.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초기적 특성은 세조 및 성종 대에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종 대는 조선 초기적 특징이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사상과 현실을 이끌어갈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 인식의 문제를 유학과 연결시키고자 할 때, 사람이 등장하는 성종 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경국대전』이 성종 이전 시기에 이미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제도화의 과정을 예종 대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경제육전(經濟六典)』 및 그 속전(續典)들, 그리고 『경국대전』으로 마무리되는, 조선 초기 법전들에는 조선 초기 사회가 지향하는 바의 여성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세력과 이념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또 협상하고 충돌하면서 젠더 권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즉 여성 범주가 제도화하고 법령화하기까지는 각 조정 관료 학자들의 유학 지식과 현실 인식이 불꽃 튀는 경쟁을 거쳐야 했다. 각 왕의 국정 운영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또한 그러한 ‘전장(戰場)’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유학의 이론이 조선 초기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 만나 어떤 전망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조선 초기 여성 범주의 제도화는 지배담론에서 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일정한 응답이 될 것이다.

II. 조선 초기 사회와 유학의 역할

조선 초기 유학의 여성 인식은 법전의 구상과 정립으로 구체화되는데, 여기에는 조선의 현실이 유학의 이론을 만나 이루어낸 갈등과 협상의 여정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유학의 역할 및 성격은 조선의 다른 시기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먼저 조선 초기의 사회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세 왕조 조선의 당면 문제는 부국강병과 중앙집권화였다. 그것을 위해 전 국토와 인민을 파악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및 왕권 강화의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먼저 국가경영의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조선 농업경제사에서 이 시기는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私

田)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는데, 과전법(科田法)의 변형을 통한 직전법(職田法)의 시행이 그것이다. 직전법의 실시는 관료의 특권을 배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전의 일종인 수신전(守信田)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혁파되기에 이른다. 수신전은 여성이라는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지(田地)이다. 하지만 그 여성은 과부여야 하고, 과부 중에서도 재가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과전을 받았던 관료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수신전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매우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신전이 혁파되기까지, 그것을 둘러싼 담론은 조선 초기 사회에서 성별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 시기에 사회통합의 요구는 어느 시대보다 그 비중이 커졌다. 유학의 사회통합 방법론은 도덕을 매개로 하는데, 즉 통치자의 도덕성 제고와 민에 대한 도덕적 교화를 통해서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도덕에 의한 사회통합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자연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그 자연법적 질서로부터 주어지는 도덕적 의무의 준수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주와 신하 그리고 민이 일정한 위계질서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현실은 아직 그러한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도덕을 매개로 한 사회통합 방법론의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집권층은 도덕적 사회통합 즉 유교적 사회통합론을 표방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실상 조선 초기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도덕적 이념보다 법과 제도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건국기의 지배층은 인정(仁政) 못지않게 형정(刑政)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것은 정도전이 생각한 왕의 통치 전략에서도 드러나는데, 그가 지은 『경제문감(經濟文鑑)』에서 이렇게 말한다.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임금이 겸손하고 유순하게 아랫사람을 접하면 대중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군의 도리란 오로지 겸손과 유순만을 중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위무를 같이 쓴 연후에야 천하를 회유하여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다.”⁴⁾ 부국강병과 중앙집권화는 왕권

3) 김홍경, 『관학과의 유학사상』(한길사, 1992), 52~53쪽 참조.

4) 『三峰集』第12卷 『經濟文鑑』(別集下), 「威德並著」.

강화의 맥락에 있지만 그것은 왕권에 의해서만 추진되지 않았다. 즉 정책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론가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재능 있는 관료가 필요했다. 이에 부응한 사람들이 사림파 유학자와 구별되는, 조선 초기에 활동한 관학과 유학자이다. “이들의 학문과 사상은 수기(修己)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치인(治人)의 경학(經學)과 치국(治國)의 기술학에 관심이 컸다.”⁵⁾ 그래서 “이 시기의 유학 교육은 공업(功業)과 사공(事功)을 강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교육문제는 도학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법제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신왕조 조선은 유학 지식인을 주축으로 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이 작업의 첫 결과물은 태조 3년(1394) 유학자 정도전에 의해 『조선경국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주례(周禮)의 육관(六官)에 근거하여 국가의 행정 조직을 치(治) · 부(賦) · 예(禮) · 정(政) · 현(憲) · 공(工)으로 구성한 것이다. 또 태조 4년(1395)에는 중국과 고려의 고사를 참작하여 여러 관직제의 유래와 기능을 정리한 『경제문감』이 나왔다.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새로운 국가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정치이념과 제도의 두 축면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것은 ‘인정의 원리에 기초한 법전, 즉 유교의 인정 이념을 법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유교적 법치론’⁷⁾이라 할 수 있다. 『조선경국전』의 「예전(禮典)」 혼인(婚姻)조와 「현전(憲典)」 범간(犯姦)조 등은 부부관계와 남녀관계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경국전』이 조선 국가의 틀을 체계적으로 드러낸 구상서인데 비해 태조 6년(1397)에 나온 『경제육전』은 조선의 다양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최초의 법전이다. 국가가 주도하고 조준이 책임을 맡은 이 법전 역시 육전(六典) 체제인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육전』의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록과 기타 문헌에 각 조문이 인용된 것을 토대로 하여 복원하였는데,⁸⁾ 그것으로 『경

5)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1쪽.

6) 정순우, 「한국 유학교육의 특징과 성격」, 『韓國儒學思想大系II: 教育思想』(국학진흥원, 2006), 32-33쪽.

7) 정호훈, 「조선전기 法典의 정비와 『經國大典』의 성립」,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혜안, 2004), 53쪽.

제육전』의 내용이 파악되고 있다. 『경제육전』은 『경국대전』처럼 모든 조문의 중복과 모순을 조종하여 만든 종합법전이 아니라 수시로 모은 수판(受判) 및 정령(政令)의 조례를 엮은 수교집이다. 따라서 『경제육전』은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담아낼 속전의 편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태조 6년에 간행된 『경제육전』은 1388년부터 1397까지 시행된 규정을 모은 것이다. 그 후 1397년 이후에 이루어진 국왕의 수교조례(受敎條例)를 추가한 『경제육전속전』이 태종 7년(1407)에 편찬되어 태종 13년에 공포 시행되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태조 때 편찬된 『경제육전』을 『경제원육전』, 『원육전』, 『방언육전』이라 하였고, 태종 때의 『경제육전속전』을 『속육전』, 『속전』이라 하였다. 다시 세종 8년(1426)에는 1408년 이후의 수교조례를 추가하여 『속육전』 6책과 『등록(瞻錄)』 1책이 만들어졌다. 『등록』 또는 『육전등록』은 ‘한 때의 권도(權道)로서 영구성이 없는 법을 따로 편목(篇目)’⁹⁾한 것이다. 이 때 영구히 지켜야 할 법령은 전(典)에, 필요에 따라 시행할 법령은 수(錄)에 수록하자는 법령 편찬의 원칙이 정해졌다. 세종 15년(1433)에는 다시 두 책을 개수하여 한데 엮은 『경제속육전』을 공포하였다. 『경제육전』과 그 속전들은 『경국대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국가 경영의 표준적인 법전으로 기능하였다. 말하자면 태조부터 단종까지 약 60년간은 각종 교지나 조례 등을 모아 이를 중보해나가는 『경제육전』의 시대였다.

세조는 집권과 함께 『경국대전』의 편찬을 추진하여 완성하였는데, 그것은 예종 원년에 공포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은 다시 성종 연간에 몇 차례의 수정 보완의 작업을 거쳐 성종 16년(1485)에 완성되었다. 조선 초기 7~80여 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앞선 법전의 사상 및 이념을 계승하면서, 현실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다음의 상소는 전국 초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나온 각종 제안들이 종합 법전 『경국대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8) 『경제육전』은 인용된 조문들을 가능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태로 추출하고 이를 조문을 분석하여 유사한 또는 서로 관련된 조문을 당시의 구분에 맞게 묶어 주는 작업을 통해 복원될 수 있었다. 『경제육전』의 복원 작업으로는 花村美樹, 「『經濟六典』について」, 『法學論纂』第一部 論集(第五冊), 1932); 전봉덕, 『經濟六典拾遺』(아세아문화사, 1989); 연세대 국학연구원(편), 『經濟六典輯錄』(신서원, 1993)이 있다.

9) 『세종실록』, 10년(1428) 11월 29일.

무릇 부인으로 봉(封)함을 받는 자는 모름지기 처녀[室女]로서 남의 정처(正妻)가 된 자라야 봉함을 얻고, 비록 정처라 하더라도 원래 처녀가 아닌 자는 봉작(封爵)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그 세계(世系)에 명백한 허물이 있는 자는 비록 정처라도 봉작을 허락하지 말고,…가장이 죽고 개가한 자는 봉작을 추탈(追奪)하게 하소서.¹⁰⁾

건국 초 태조 5년(1396)에 나온 위의 상소가 『경국대전』에서는 재가녀의 봉작을 허가하지 않음은 물론 그녀의 자손까지도 관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법령화되었다.¹¹⁾ 이에 의하면 여성은 ‘처(妻)’의 자격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육체적 순결의 함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다시 말해 조선 초기의 여성 인식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사회가 성별보다 신분을 더 강하게 인식했다¹²⁾고 본다면, 조선에서는 신분 못지않게 성별이 사회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III. 부부관계의 제도화와 유학

조선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개인보다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파악되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인식도 가족 및 그 이념이 구성되는 그 시대의 방식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다. 가족을 통한 조선 초기의 통치 구상은 『대학』의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원리가 조선의 현실과 접목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 초기의 지배층은 가족 구성의 출발이 되는 부부와 그 관계의 규칙들을 경전을 통해 발굴해내고, 그것으로 현재의 전망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부부 각각의 위치를 정하는 ‘부부정위(夫婦定位)’와 부부를 차별적으로 배치한 ‘부부위계(夫婦位階)’의 방식이다. 그 제도의 보편타당성은 유학의 원리 및 이론을 통해 확보되었다. 즉 부부관계의 제도화는 가도(家道)의 서사 및 삼강(三綱)의 담론을 통해 구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선 초기의 법전 및 법령 제정의 과정이 담겨 있는 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태조실록』, 5년(1396) 5월 20일.

11) 『경국대典』, 「吏典」, 外命婦條. “庶孽及再嫁者勿封. 改嫁者追奪,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失行婦女, 及再嫁女之所生, 勿敘東西班職.”

12) 마르티나 도이힐러(저)/이훈상(옮김),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아카넷, 2003).

1. 가도(家道)의 서사와 부부의 정위(定位)

조선 최초의 법전적 구상서인 『조선경국전』은 남녀의 혼인을 ‘인륜의 근본[人倫之本]’이자 ‘역사의 시작[萬歲之始]’이라고 보았다. 조선을 통치할 새로운 이념을 유학에서 구한, 배불론자(排佛論者) 정도전은 혼인의 중요성을 유교 경전과 성인의 권위로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남녀는 인륜의 근본이고 만세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역경』에서는 건곤(乾坤)을 첫머리에 실었고, 『서경』에서는 이강(釐降)을 기록했으며, 『시경』에서는 관저(關雎)를 기술했고 『예기』에서는 대혼(大婚)에 대해 공경스럽게 다루었으니 성인이 남녀를 중히 여김이 이와 같았다. 나라의 흥망은 가정의 성쇠에서 연유하는 것이다.¹³⁾

남녀를 그 자체로 남겨두기보다 가족 속의 부부에 의미를 둔 이 구상은 부국강병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던 건국기의 시대적 소명과 분리될 수 없다. 즉 국가의 흥망은 가정의 성쇠(盛衰)에서 연유하고, 가정의 성쇠는 혼인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건국기 정도전이 직면한 혼인과 가족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지금 우리나라) 친영(親迎)의 예가 폐지되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인이 무지하여 자기 부모의 사랑을 믿고 남편을 경멸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교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서 마침내는 남편과 반목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 가도(家道)가 무너지는 것은 모두 시작이 근엄하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에 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지어서 이를 정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풍속을 통일시킬 수 있겠는가? 신은 성경(聖經)을 상고하고 본시(本始)를 삼가서 혼인편을 짓는다.¹⁴⁾

13) 『三峰集』第13卷, 『朝鮮徑國典』上, 「禮典」, ‘婚姻’. “男女者, 人倫之本, 而萬世之始也. 故易首乾坤, 書記釐降, 詩述關雎, 禮董大婚. 聖人之重之也如此. 自三代以來, 國之興廢, 家之盛衰, 皆由於此.”

14) 『三峰集』第13卷, 『朝鮮徑國典』上, 「禮典」, ‘婚姻’. “又親迎禮廢, 男歸女家. 婦人無知, 恃其父母之愛, 未有不輕其夫者. 驕恣之心, 隨日以長. 卒至反目. 家道陵替, 皆由始之不謹也. 不有上之人制禮以齊之, 何以一其風俗哉. 臣稽聖經謹本始, 作婚禮篇.”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가는 형태의 친영(親迎)은 종법제를 지탱하는 혼인제도이다. 정도전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드는 풍속으로 인해 남자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가도(家道)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런 풍속은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가진 법과 제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가도(家道)의 정립이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다. 그것은 친영제를 통한 남성 권력의 확보이다. 또한 정도전은 『경제문감』에서 “가정에서의 도리가 지극해지면 걱정이나 수고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¹⁵⁾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인신(人身)에 대한 지배는 가족을 통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여성은 가족 속에 위치시키려는 조선 초기의 노력들은 통치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모색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 9년(1427)에는 “여자가 실행(失行)하는 것은 혼인 시기를 잃었기 때문”¹⁶⁾이라고 했고, 세종 17(1435)년에는 가난하여 혼인 시기를 넘긴 여자에게는 친족 및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주고,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법전에 기재된 대로 그 주혼자(主婚者)를 논죄한다고 했다.¹⁷⁾ 이러한 수교(受敎)가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사족의 딸로 나이 30에 가까웠는데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예조의 계문으로 혼수 비용을 준다”¹⁸⁾고 하였고, 그 부주에는 “가난하지 않은데 나이 30이상의 딸을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그 가장을 엄중하게 다룬다”고 하였다. 즉 혼인에 대한 조선 초기의 담론과 그 법제화의 방향은 혼인을 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강제 사항으로 인식한 것이다.

혼인 부부에 대한 제도의 보편화는 유교 경전이나 유학의 원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즉 치국(治國)의 요체는 가도(家道)의 정립에 있고, 가도의 정립은 혼인 질서를 바로 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통합에 대한 유학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 근본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데 법칙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두고 한 말이다”¹⁹⁾고 한 것처

15) 『三峰集』第12卷, 「經濟文鑑」別集 下. “有家之道既至, 則不憂勞而天下治矣.”

16) 『세종실록』, 9년(1427) 9월 4일. “上曰, 女子失行, 婚嫁失時之致.”

17) 『세종실록』, 17년(1435) 9월 29일.

18) 『經國大典』, 「禮典」, ‘惠恤’. “士族之女, 年近三十貧乏, 未嫁者, 本曹啓聞量給資財.”

19) 『近思錄』, 「治體」 1. “濂溪先生曰, 治天下有本, 身之謂也. 治天下有則, 家之謂也.”

럼 ‘제가(齊家)’는 치국(治國) · 치천하(治天下)의 방법인 것이다. 이것은 곧 개인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가족에게 일임함으로써 원활한 사회 통치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이 사회통합의 단위가 됨으로써 여성을 ‘부부’로 편성해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책적으로 지지되었다. 아직 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 초기의 여성들은 혼인을 선택하기보다 비구니가 되어 입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정자들은 혼인을 ‘거부’하는 이런 여성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원육전(元六典)』에서는 “여승[尼]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절개를 잃는 것으로써 논한다”²⁰⁾고 하였다. 태종 대에는 아버지가 죽고 가난하여 여승이 되려는 처녀에게 자장(資糧)을 주어 혼인하도록 했고(태종 10년), 정업원(淨業院) 외의 여승방[尼僧房]을 금지하고 철거하였다(태종 11년). 또 “양가(良家)의 처녀로서 여승이 된 자를 모두 훈속시키고 성혼(成婚)시켜 인륜을 바루소서”²¹⁾라는 상소가 받아들여졌다. 세종 23년(1441)에 성균 생원 유이(柳貽) 등은 여승들이 불교 교리를 가지고 부녀들을 우롱하여, 이에 부녀들이 여승이 되고자 가정을 버리고 부처에 귀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왕의 결단을 요구했다. 여자들을 혼인시켜 부부관계로 편입시키려는 이러한 전략들은 유교 경전의 지식으로 합리화되었다.

『경전』에 이르기를,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게 하고, 밖으로는 탄식하는 지아비가 없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부부의 음양(陰陽)이 화합함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 중앙과 외방 관리에게 명하여, 30세 이하의 여승들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혼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²⁾

그러면 남녀가 부부가 된 후, 그 부부가 구성하는 가족 내부의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가? 태조 5년(1396)에 이조(吏曹)에서는 남편에 따른 아내의 품계를 정했는데, 1품에서 6품까지의 정처(正妻), 그리고 7품 이하의 정처(正妻)에 대한 명칭이 주어졌다.²³⁾ 『경국대전』에서는 남편의 작위에 따른 아내의 품계를 외명

20) 『단종실록』, 1년(1453) 4월 27일. “《元六典》一款: ‘凡尼上寺者, 以失節論.’

21) 『태종실록』, 13년(1413) 6월 29일.

22) 『세종실록』, 25년(1443), 5월 16일.

23) “각 품의 정처(正妻)는 1품이 군부인(郡夫人), 2품이 현부인(縣夫人), 정3품으로 성균 대사성(成均

부에 배속시켜 1품에서 9품까지의 각 품을 정(正) · 종(從)으로 나누어 세분화하였다.²⁴⁾ 이 역시 유학의 원리 및 유교 경전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이것의 구체적 모습은 당대 최고의 학자 그룹이 작성한 비빈(妃嬪) 책문(冊文)에 잘 나타나 있다. 비빈 책문은 조선 초기 사회가 지향하는 부부관계의 전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부인됨의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서사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준다.

『역경(易經)』에는 함괘(咸卦)와 항괘(恒卦)를 나타내어 인륜(人倫)을 바로잡았으며, 『예기(禮記)』에는 명분(名分)을 엄하게 하여 배필을 소중히 여기었다.²⁵⁾

그대를 책봉하여 왕세자(王世子) 정빈(貞嬪)으로 삼노라. 아아! 매양 계명(鶴鳴)²⁶⁾의 경계를 바쳐 덕음(德音)을 어기지 말고, 길이 인지(麟趾)²⁷⁾의 상서에 응하여 복록을 받을지어다.²⁸⁾

천지가 그 위치(位置)를 정하니 만물이 생겨났고, 인군(人君)과 후비(后妃)가 덕을 합하니 모든 교화(敎化)가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비(元妃)를 세우는 것은 내치(內治)를 돋고 음교(陰敎)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아! 그대 윤(尹)씨는…²⁹⁾

제도와 비빈 책문에 표현된 바, 부부의 모델은 아내가 남편에 배속된 존재로 설정되었다. 즉 가도(家道) 학립의 맥락에서 부부 각자의 위치를 정하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지위에 따른 정치 · 경제적 보장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앞에서 본 바, 혼인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아내’ 외의 다른 직분을 허용할 제도적 장치

大司成 이상은 숙인(淑人), 3품은 영인(伶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儒人)으로 정한다. 『태조실록』, 5년(1396) 5월 20일.

24) 『經國大典』, 『吏典』, 外命婦條.

25) 『태조실록』, 7년(1398) 11월 18일.

26) 『시경』의 편명으로 주나라 선왕(宣王) 강후(姜后)의 내조의 공을 읊은 것이라 한다. 강후는 늦잠자는 버릇이 있는 남편을 잘 내조하여 중홍의 군주로 만든 인물로 이야기된다. 유형(刑)이숙인(鬻金), 『列女傳』, 『賢明』, 『周宣姜后』 참조.

27) 『시경』의 편명으로 문왕의 비 태사(太姒)의 덕을 칭송한 것이라 한다. 기린은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으며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린의 발자국’이라는 자의를 가진 ‘인지(麟趾)’는 후비의 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상징어가 되었다(유향, 위의 책).

28) 『정종실록』, 2년(1400) 3월 4일.

29) 『세조실록』, 1년(1455) 7월 20일.

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개인의 자격으로 일과 직분을 가진 ‘특수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지배답론 바깥의 존재들이었다. 절대 다수의 여자에게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자리가 중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그 남자의 부인 자격으로서 작위와 재산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낳은 자식이 그 남자의 계보를 이을 자인가? 이 문제는 ‘부부정위(夫婦定位)’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담론과 법령은 관직자 남편의 ‘정상적인’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서얼과 재가녀(再嫁女)³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부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며, 다처(多妻) 또는 다첩(多妾)의 현상이 어떻게 재배치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부부정위’의 법적 표현은 한 아내만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첩의 질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부정위’에 대한 원리론적 접근, 즉 “배필(配匹)을 중하게 하는 것은 인륜(人倫)을 두텁게 하는 것이요, 위호(位號)를 높이는 것은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는 것”³¹⁾으로는 조선 초기 부부관계의 제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요컨대 조선 초기 부부 제도화의 방향은 부부가 사회관계의 실마리가 된다고 한 ‘부부조단(夫婦造端)’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정하는 ‘부부정위(夫婦定位)’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부부정위’는 아내를 남편에 배속된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그 안에 이미 ‘부부위계’의 가능성은 안고 있는 것이다.

2. 삼강(三綱)의 담론과 부부의 위계(位階)

부부 각자의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한다는 그 자체가 불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담론과 제도에서는 아내의 자리가 남편에 따라 정해지거나 아내의 영역인 ‘내치(內治)’를 남편의 영역인 ‘외치(外治)’의 보조로 설정하는 등의 ‘부부위계’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제도화는 부부 내부의 ‘바람직한’ 질서는 물론 존재하던 다양한 형태의 부부를 하나의 부부 모델로 통합시킴을 의미하였다. 정식 처를 정하는 문제와 처첩을 판별하는 문제가 조선 초기 분쟁의 주요 주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30) 『經國大典』, 『吏典』, 外命婦條. “庶孽及再嫁者勿封. 改嫁者追奪.”

31) 『정종실록』, 2년(1400) 3월 4일.

고려의 유습이 강했던 조선 초기에는 두 세 명의 ‘정식’ 아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경제육전』에서는 “두 세 아내를 모두 적처로 논한다”³²⁾고 하였고, 권도(權道)을 엮은 『육전등록』에는 “함께 봉작(封爵)할 순 없지만, 그 전토는 나누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대세는 ‘정통’ 혹은 ‘정식’ 부인을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 쪽이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남편에 따른 아내의 품계와 남편 사후 과전의 승계 문제와 관련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전거는 “예[예기]에서 두 적처가 없는 것은 하늘은 세우고 땅은 베푸는 만세에 바뀌지 않는 떳떳한 이치”라는 것이었다.

태종 13년(1413)에는 여러 아내 중 누가 ‘정식’ 처’인가를 다투는 분쟁이 빈번해지자 조정 회의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식 혼인례를 치렀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처첩을 분간했던 방식을 바꾸어 먼저 사람을 처로 삼아 봉작과 체전을 행하는 쪽으로 결정났다.³³⁾ 태종 14년(1414)에는 상시적인 분쟁 주제였던 적자와 서자의 판결기준을 정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격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는 선후(先後)보다 사랑의 깊이, 이혼의 유무, 동거의 여부를 결정요인으로 삼게 되었다.³⁴⁾ 2년 후 태종 16년에는 적실과 계실, 첩실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그것은 임금의 가계와 관련한 것이었는데, 임금에게는 예로 대우해야 할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임금이 좌우에 이르기를, “계모(繼母)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하니, 유정현(柳廷顯)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를 계모라고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그렇다면 정릉(貞陵—신덕왕후 강씨를 이름)이 내게 계모가 되는가?”하니, 대답하기를 “그때에 신의 왕후(神懿王后)가 승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릉(貞陵)은 내게 조금도 은의(恩義)가 없었다.”³⁵⁾

위 예문의 핵심 내용은 처첩 판별 문제이다.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버지 태조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작용이 컸다. 태종은 신덕왕후에 대한 감정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 대신들이 제공한 전거 자료에 의해 신덕왕후 강씨는 정식 처가 아닌 첩이 되는데, 선후(先後)가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1년 후인 태종 17년(1417)에는 선후(先後)로서 처첩을 분간하는 쪽으로 법령화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유학의 도덕원칙인 삼강(三綱)이다.

‘선처 · 후처의 안에서 적실(嫡室)은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을 가지고 분간하여 결절(決折)하라’ 한 것에 대해 신 등은, 부부란 삼강(三綱)의 으뜸이고, 예문(禮文)에도 두 적실(嫡室)이 있을 수 없음을 천지의 상경(常經)이자 고금의 통의(通義)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선후를 논하지 않고 은의의 후박으로 적실을 따지겠습니까?³⁶⁾

적자 · 서자를 판별하는 규칙이 정해진 17년 뒤인 세종 16년(1434)에는 서자의 승중(承重) 자격을 논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서자에게는 승중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정직의 자손만이 존조(尊祖)의 의(義)를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풍속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종족(宗族)이 화목하고 인륜(人倫)이 두터워질 것”³⁷⁾라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조선 초기의 처첩 및 서얼의 역사를 명종 때의 사헌부의 계(啓)는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에서는 적첩의 구분만을 엄하게 할 뿐 그 자식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과는 무관했는데, 고려에서도 그려했다. 태종 15년에 서얼 자손을 현관(顯官)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법을 세웠고, 그 내용이 세종 15년의 『경제육전』에 등재되었다. 그렇다면 세종조 이전에는 서얼에게 벼슬길을 열어준 것이다. 세조 말년에 편찬되고 성종 2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의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失行婦女之子, 庶孽子孫, 勿許赴]’고 하였다.”³⁸⁾

36) 『태종실록』, 17년(1417) 2월 23일.

37) 『세종실록』, 16년(1434) 4월 16일.

38) 憲府啓曰: “臣等博考庶孽之名, 所謂庶者, 良妾子也, 所謂孽者, 賤妾子也. 中國之人, 只嚴其嫡妾之分, 不嘗廢嫡而不用矣. 其在前朝, 亦不廢嫡. ……至於太宗十五年乙未, 用代言徐選等言, 立庶孽子孫, 不任顯官之法, 世宗十五年癸丑, 黃喜等撰《經濟六典》, 亦載此法. 以此見之, 則世宗朝以前, 許通仕

32) “《六典》所載二三妻, 皆以嫡論者, 全爲其子而言也.”

33) 『태종실록』, 13년(1413) 3월 10일.

34) 『태종실록』, 14년(1414) 6월 20일.

35) 『태종실록』, 16년(1416) 8월 21일.

처첩 및 적서의 제도화가 과생한 문제들은 여성들 내부 분쟁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분쟁 중 대부분의 사례는 다처 혹은 처첩을 둔 남자들이 사건의 중심에서 비켜 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제도 속에서 부부 각자의 사회적 지위가 위계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대두되어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었던 처첩과 적서의 문제는 제한된 관직과 토지의 분배문제와 관련된, 봉건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환원되곤 한다. 이것은 또 차이나 공존을 사고하기보다 적통, 정통, 혈통 등 ‘통(統)’의 개념으로 질서를 사고한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태종이 정확하게 간파한 바, “사대부들이 자기 욕심을 죽고 정애(情愛)에 혹해서 처가 있는데도 다시 처를 얻거나 첩을 처로 삼는 자가 있게 되어 사회적인 분쟁이 된”³⁹⁾ 것이다. 물론 이것을 전적으로 남성 개인의 욕망이나 도덕성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에는 여성들 남편 종속의 위치에 배속시킨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위계화한 것은 죄의 개념을 해석한 데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의 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강상의 죄에 걸려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나라에 특별한 행사나 일이 있을 때, 죄인을 사면하는 은혜를 베풀었다. 왕의 즉위식, 세자 책봉식, 왕의 탄신일 등의 기념일과 왕이 위독하여 온 나라의 정기를 모아야 할 때를 당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한 각종 죄는 사면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건을 실록의 기사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다.

某년 某월 새벽 이전에 모반(謀叛)·대역(大逆)한 것, 자손(子孫)으로서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를 죽인 것,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인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죽인 것…을 제외(除外)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이를 용서하여 면제한다.

路也, 明矣. 世祖末年, 崔桓等撰《經國大典》, 成宗二年始頒降, 是曰《辛卯大典》也. 其《禮典》諸科條曰: ‘失行婦女之子’庶孽子孫, 勿許赴’云, 越年改撰《大典》, 是曰《甲午大典》也. 其諸科之條, 亦如此矣. 『명종실록』, 8년(1553) 10월 15일.

39) 『태종실록』, 13년(1413) 3월 10일.

즉 모반이나 대역의 죄와 강상(綱常)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상전과 종의 관계처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세종 7년(1425)에 국왕은 처첩이 남편을 죽인 죄는 ‘법전’에 실려 있으나 구타한 것에 대한 법전 조항이 없으니 그 판결 사례를 조사해보라는 명을 내렸다.

처첩이 남편을 죽이고, 가손이 부모나 조부모를 모살하고, 노비가 주인을 모살하는 등의 일은 사문에 실려 있으나 처첩이 남편을 구타하고 노비가 주인을 구타한 일은 사문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용당 사하는 실례를 다루는 데에 있을 것이니, 그 교지(敎旨)를 상고하여 아뢰라.⁴⁰⁾

이 이후 남편에 대한 처첩의 태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점점 섬세해질 전망을 보인다. 태종 때의 『속육전』에는 “노비로서 가장을 고발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고발한 자를 교형에 처한다”⁴¹⁾고 하였다. 이 조항이 『경국대전』에서는 “자손·처첩·노비가 부모나 가장을 고발한 경우, 모반이나 반역의 일이 아니면 교형에 처”⁴²⁾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즉 자손이 부모를, 처첩이 남편을 고발하는 것도 범죄 행위로 치가되었다. 다시 말해 삼강(三綱)의 담론에 힘입어 부부는 장유와 신분과 같은 위계적 관계로 제도화되었다.

‘사회와 역사는 부부에서 시작된다’는 『중옹』의 ‘부부조단설(夫婦造端說)’이나 『예기』의 ‘부부인륜지시설(夫婦人倫之始說)’를 말 그대로 이해하면 부부가 중요한 관계라는 뜻이다. 이 원리가 반드시 남편위주·부인보조의 방식으로, 즉 부위부강(夫爲婦綱)의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위계화한 조선 초기의 제도는 유학의 원리를 해석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0) 『세종실록』, 7년(1425) 10월 15일.

41) 『續六典』. “奴婢告家長者, 勿受處絞.”

42) 『經國大典』, 『刑典』, 告尊長. “子孫妻妾奴婢, 告父母家長, 除謀叛逆反外絞. 奴妻婢告家長, 杖一百 流三千里.”

IV. 여성 정욕(情欲)의 제도화 유학

여성의 정절은 건국 이후 조선 전 시기를 통해 꾸준히 강조되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정절의 가치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제도와 이념에 의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남녀'의 문제가 함의하는 바, 여성 섹슈얼리티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어떤 논리로 합리화되는지를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실행'이 풍속의 담론을 통해 구성되고, 인정(仁政)의 제도가 여성 정욕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볼 수 있다.

1. 풍속의 담론과 여성의 실행(失行)

『조선경국전』에 의하면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욕(情欲)에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 왕화(王化)와 치국(治國)이 불가능하다. 옛 성인들도 이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고, 과거의 성왕들은 예(禮)와 형(刑)을 제정해서 정욕에 한계를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아름다운 풍속과 훌륭한 정치를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되고, 王者的 교화는 閨門에서 출발한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은미한 것이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규문 단속이 허술하여 남녀간에 구별이 없다면 인도가 문란해져 왕화가 민멸될 것이다. 그리고도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겠는가? 옛날 성왕들은 예(禮)를 만들어서 그들의 정욕을 절제했고 형(刑)을 제정해서 그들의 음탕한 행동을 억제했으니, 지치(至治)를 일으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혼인에 대한 제도는 예전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범간에 대한 법령은 현전에서 엄중하게 다룬다. 이것은 대개 예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형(刑)에 들게 되므로 예로써 바루고 형으로써 징계하자는 뜻이다. 성인이 이 관계를 중시함이 이와 같았거늘 후세에 입법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⁴³⁾

43) 『三峰集』第14卷, 『朝鮮經國典』上 「憲典」犯姦, “君子之道, 造端夫婦, 王者之化, 始自閨門, 隱微之際, 所係甚重, 帷薄不修, 男女無別, 人道亂而王化泯矣. 其何以爲國家哉. 古昔聖王, 為禮以節其情欲,

이 논리에 의하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다. 남녀의 정욕을 절제하는 그 사회적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길 경우 형(刑)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욕의 예제(禮制)는 남성의 것을 규제하기보다 여성의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 '실행(失行)'의 담론과 그 법제, 상사(上寺) 및 외출의 금제, 개가(改嫁)의 담론과 그 법령 등은 여성 정욕의 제도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조선경국전』에서 왕화(王化)의 출발이라고 한 부부관계는 태종 6년(1406)의 수교(受敎)에서 부인의 정절 문제로 비약되었고, 정절은 개가(改嫁)로 확대 해석되었다. 즉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은 '부인됨의 도리'를 어기는 것이고, 인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부인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시집가는 자를 자녀안(恣女案)에 올리도록 했다.⁴⁴⁾ 이 수교는 다음 해에 공포된 『속유전』에서 "사대부의 처로서 세 번 남편을 얹는 자는 자녀안에 기록한다"⁴⁵⁾는 법령으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세종 18년(1436)에 올라온 상서에는 『속유전』에서 명시한 '자녀안'의 법령을 주무할 관청이 없어 '허문(虛文)'이 되고 있다고 하며, 사헌부에 그 책임을 맡기자고 하였다.⁴⁶⁾ 세조 7년에 반포된 『경국대전』, 『형전』에는 "사족의 부녀로서 실행한 자는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고 그 부주에는 "세 번 시집간 자도 이와 같다"⁴⁷⁾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기 법전의 '세 번 시집간 자'의 자리에 후기의 『경국대전』에서는 '실행한 자'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행위를 '실행(失行)' 혹은 '실절(失節)'로 규정할 것인가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쪽의 규정은 선진(先秦), 한당(漢唐), 송(宋) · 명(明) · 청(淸)의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여성에게 요구된 그 시대의 주요 가치가 무엇인가에

爲刑以制其淫邪 所以興至治而美風俗也 故婚姻之制 謹之於禮典 犯姦之令 嚴之於憲典 蓋出乎禮 必入乎刑 禮以正之 刑以懲之 聖人之重之也如此 後之爲紀法之宗者 其可忽諸

44) 『태종실록』, 6년(1406) 6월 9일. “夫婦, 人倫之本, 故婦人有三從之義, 無更適之理. 今士大夫正妻, 夫歿者, 見棄者, 或父母奪情, 或粧束自媒, 至二三其夫, 失節無恥, 有累風俗. 乞大小兩班正妻適三夫者, 依前朝之法, 錄于《恣女案》, 以正婦道.”

45) 『세종실록』, 18년(1436) 6월 18일. “《續六典》內: “士大夫之妻, 更適三夫者, 錄于《恣女案》”

46) 『세종실록』, 18년(1436) 6월 18일. “臣等謹按《續六典》內: “士大夫之妻, 更適三夫者, 錄于《恣女案》.” 無有掌司, 尚未舉行, 遂使令典, 徒爲虛文. 願自今本府成案錄名, 以勦風

47) 『경국대전』, 『刑典』禁制條 “士族婦女, 失行者, 錄案(更適三夫者同).”

따라 정절의 내용을 달리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면 조선 초기에 ‘실절’ 혹은 ‘실행’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원육전』에는 “중[僧]으로서 과부(寡婦)의 집에 출입하는 자는 여색을 범한 것으로 써 논하고, 여승[尼]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절개를 잃는 것으로 써 논한다”⁴⁹⁾고 하였다. 이보다 뒤에 나온 『(속)육전』에는 “부녀와 여승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실절한 것으로 논한다”⁵⁰⁾고 하였다. 여승이 절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여자가 혼인하지 않고 중이 되어 절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 같다. 여기서 정육 절제의 요구 또는 ‘실행’의 담론은 부녀 외에 조선 초기 권력 재편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교승에게도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상사(上寺)의 문제에서 『경국대전』은 “유생(儒生)과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장 1백의 형에 처한다”⁵¹⁾고 하였다. ‘상사금지(上寺禁止)’ 조항이 『경제육전』에는 「예전(禮典)」에 편성되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형전(刑典)」에 편성되었는데, 이후로 갈수록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행’이라는 용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담론의 성격이 강한 조선의 정치에서 ‘사실’은 권력관계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젠더 위계적인 권력관계에서 남성을 불편하게 하는 여성의 행위는 ‘실행’이라는, 애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했을 것이다. 시집 간 여자의 친정 출입을 제한하고, 부인과 내왕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를 명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간 경우에, 부모가 이미 죽었으면 친정에 가는 법이 없었으니 매우 엄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 풍속이 퇴폐해져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문세가를 찾았다는 것을 당연시했으니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부터 문무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친형제·친자매·친백숙부·친외숙·친이모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 잡으소서.⁵²⁾

48)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여이연, 2005), 175~185쪽.

49) 『단종실록』, 1년(1453) 4월 27일. “諫政府啓: 《元六典》一款: ‘凡僧出入寡婦之家者, 以犯色論; 凡尼上寺者, 以失節論.’

50) 『세종실록』, 16년(1434) 5월 1일. “婦女與尼僧上寺, 以失節論, 載在《六典》.”

51) 『경국대전』, 「刑典」, 禁制條. “儒生婦女上寺者, …士族婦女遊宴山間…杖一百.”

이것이 『경제육전』에서 “양반의 부녀는 부모·친형제·자매·친백숙부, 고모, 친외숙과 이모 외에의 사람과 내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어기는 자는 실행(失行)으로 논한다”⁵³⁾로 법제화되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 이 조항은 없어졌다. 유학을 혁명의 무기로 삼았던 조선 건국기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단(異端)’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들에게 이단은 유학이 아닌 것, 즉 불교, 무교 등이었다. 특히 그들은 부녀들이 ‘이단’과 만나는 것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녀들의 출입을 막아야하는데, 그 논리는 풍속의 담론과 맞물린 여자 실행이었다. 세조는 이단—부녀—실절의 조합에 모순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양가(良家)의 부인이 음사(淫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실행(失行)을 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만약 여기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면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문제 삼겠느냐? 또 본래 지조를 지키는 부녀라면 비록 무당의 집에 가더라도 실절(失節)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로 지조가 없다면 비록 자기 집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맑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들으니, 최근에 현부(憲府)에서 귀신을 제사하는 평민들을 잡아다가 논죄한다고 하니, 심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⁵⁴⁾

『경국대전』에 명시된 바, 조선에서 실행한 부녀의 자손은 의정부, 육조, 대간, 도사, 수령직 등의 중요한 직책에 서용될 수 없었다.⁵⁵⁾ 여자의 실행은 남자의 ‘도독질[職吏]’과 같은 죄로 해석되었다. 실행 부녀로 일단 규정되면, 그녀의 자손은 대대로 씻기 못한 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정종 1년(1399) 및 태종 연간에 행실이 여러 차례 문제되었던 중추원부사 조화(趙禾)의 아내 김씨의 경우를 보자.

세종 11년(1429)에는 조화의 손자 조유신(趙由信)이 과거를 통해 이미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의 손자’라는 이유로 동반(東班)에서 제외되었다. 세종 13년(1431)에는 조화의 사위 박곤(朴坤)이 감사직 천거에서 탈락되었다. 장모인 조화의 처 김씨의 음행 때문이었다. 세종 17년(1435)에는 외손자 이사평의

52) 『태조실록』, 원년(1392) 9월 21일.

53) 『세종실록』, 13년(1431) 6월 25일.

54) 『세조실록』, 2년(1456) 5월 7일.

55) 『성종실록』, 14년(1483) 7월 6일. “《大典》, ‘職吏之子孫及失行婦女之子孫, 勿授政府 六曹 臺諫都事 守令等職.’”

고신이 거부되었다. 외조모의 음행 때문이었다. 문종 2년(1452)에는 중추원 부사 조유례(趙由禮)가 사직을 요청하였는데, 20여 년전에 죽은 조모의 일을 과장해서 계속 문제 삼는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조유례는 조모의 일이 자신의 집안과 정적(政敵)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조모인 조화의 처는 자녀안에 등재되었다. 그 후 그녀 자손들의 과거 응시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녀의 자손의 별주에는 친손, 친증손, 사위는 물론 외손, 외손서, 외증손서, 사위의 사위도 포함되었다. 세조 6년(1460)에는 “조화의 처(妻)가 음란(淫亂)하여 행실이 도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일찍이 청요(清要)의 직(職)을 제수(除授)하지 않았다”⁵⁶⁾고 하였다. 이때 조화의 사위 박곤을 장인으로 둔 성중식(成重識)의 감찰 제수가 거부되었다.

조선 초기에 통용된 실행(失行)이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거나 세 번 시집간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두번 시집 간’ 개가(改嫁)도 실행의 맥락에서 해석되어 갔다. 세종 14년(1432)에는 실행한 사람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삼관(三館)의 상소가 받아들여졌다. 어머니가 개가해서 낳은 손책이 과거에 응시하려는 것은 국법을 위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 상소의 내용과 논리는 다음과 같다.

“적어도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녀(婦女)의 도리(道理)를 어디에서도 바로잡을 데가 없고, 부도(婦道)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풍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량(善良)해지겠습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구우일모(九牛一毛)를 버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을 상 주어서 천만 사람을 권장(勸獎)하고, 한 사람을 벌(罰)주어서 천만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몸가짐을 잘못한 자의 자손은 조정에 벼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스스로 경계함으로써 그 행실을 고치게 될 것이니, 선비의 풍습은 바로잡지 않아도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며, 과거는 새롭기를 꾀하지 않아도 저절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⁵⁷⁾

56) 『세조실록』, 6년(1460) 2월 13일. “成重識, 朴坤之女婿, 坤趙禾之女婿也. 禾之妻淫亂失行, 故其子孫曾不授清要之職”

57) 『세종실록』, 14년(1432) 3월 3일.

『경국대전』에서 “사대부는 처가 죽은 후 3년이 지나야 개취할 수 있다. 만일 부모의 명이 있거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다면 1년 후에 개취하는 것을 허락한다”⁵⁸⁾고 하였다. ‘부모지명’이라는 애매한 조항은 사실상 상처한 남자의 1년 후의 개취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여자의 개가를 금지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가녀의 자손은 문·무관직에 서용될 수 없다”⁵⁹⁾는 것인데, 이것은 곧 개가 금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방식은 여자의 재가를 직접 금지한 것 보다 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규제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인정(仁政)의 제도와 여성의 수신(守信)

조선 초기에 행해진 수신전(守信田)이라는 토지제도는 유교적 인정(仁政), 즉 환과고독(鰐寡孤獨)에 대한 배려의 맥락에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그 전개를 통한 담론과 논리는 수신전이 여성의 성 통제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수신전은 여성 섹슈얼티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 고려에서 시작된 수신전은 조선 개국 후 60 여년이 흐른 세조 조에 이르러 혁파되었다. 수신전은 혁파되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분쟁과 담론을 가능케 했는데, 그 과정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경국전』에는 “과부로서 수절하는 자에게 주는 토지를 정했다”⁶⁰⁾는 내용이 있다. 그것이 『경제육전』에서 “남편은 죽고 자식이 있는 자는 남편의 토지 전부를 물려받고, 자식이 없는 자는 반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본래부터 절개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⁶¹⁾는 것으로 법령화되었다. 태종 6년(1406)에 왕은 개가한 자에게는 죽은 남편의 토지 전부를 회수하여 죽은 남편의 자녀에게도 주지 않는 과전체수제(科田遞受制)가 야박하다고 보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토지를 이급(移給)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물었다.⁶²⁾ 이것이 태종

58) 『經國大典』, 『禮典』婚嫁條. “士大夫妻亡者, 三年後改娶. 若夫母之命, 或年過四十無子者, 許期年後改娶.”

59) 『經國大典』『刑典』禁制條. “失行婦女, 及再嫁女之所生, 勿叙東西班職.”

60) 『三峰集』第13卷, 『朝鮮徑國典』上 『賦典』, 『經理』.

61) 『태종실록』, 6년(1406) 11월 1일. “《經濟六典》有云: ‘夫死有子息者, 全科遞受; 無子息者, 減半遞受; 本非守信者, 不在此限’, 所以勸守信也.”

11년(1411)에는 “재가(再嫁)한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이 대신 그 아비의 전지를 받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시 태종 14년(1414)에는 “자식(子息)이 있는 처(妻)의 수신전은 3분의 2만 지급”⁶³⁾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 태종 6년의 상황, 즉 ‘어머니가 재가한 경우 그 자식은 아버지의 전지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있음을 뜻한다. 또 태종 7년(1407)에는 개가한 어머니의 자녀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 없었는데,⁶⁴⁾ 그것은 자녀의 외조부모와의 관계는 어머니를 통해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자녀의 있고 없음에 따라 남편의 전지 상속 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어머니가 재가하더라도 자녀가 그 아버지의 전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것은 상속에서 자녀의 권한이 커지는 반면 어머니의 권한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 수신전을 둘러싼 상속 분쟁의 사례들은 부계 혈족의 위치를 강화시키는 가부장적 질서화의 맥락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재주권(財主權)이 약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⁶⁵⁾

태종 7년(1407)년에 제기된 토지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는 수신전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처부모(妻父母)의 전지(田地)를 물려받은 뒤에 아내를 버린 경우에, 그 아내가 소송하기를, ‘소박하여 헤어진 남편이 내 부모의 전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니, 수신(守信)하는 제 몸에게 이급(移給)하여 주소서.’ 하는데 만일 그 소송대로 따른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아내가 수신전(守信田)을 받게 되니, 진실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남편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그 아내를 버리고서 그 전지를 가지고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니, 모두 회수하소서.⁶⁶⁾

62) 『태종실록』, 6년(1406) 11월 1일.

63) 『태종실록』, 14년(1414) 8월 21일.

64) 『태종실록』, 7년(1407) 12월 12일. “再嫁婦女子息等, 欲將外祖父母田地, 依式遞受, 然田制, 本非守信者, 則無田地折給之例. 初不守信, 傳係已絕婦女子息, 他例折給安徐…政府議得. ‘其母不守信, 傳係已絕, 其子息遞給安徐.’

65) 조은, ‘가부장적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 조선전기 재산상속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권 2호(2000). 5~34쪽 참조.

이 경우는 수신전의 범주에서 다를 사안이 아니다. 또한 조정 대신들의 머리 속에는 수신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들어 있지 않다. 수신전의 초기 의미는 남편이 받았던 과전을 남편 사후에도 부인이 계속 받음으로써 자신과 그 자녀의 생계를 도모하자는 데 있었을 것이다. 즉 국가의 지원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 외에 세록(世祿)의 합의를 가지는 사회통합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적 구상이 변질되어 ‘수신(守信)’이라는 명칭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위의 예문이 보인 바 명칭이 실제를 압도하게 된 것이다.

후에 세조의 사돈이자 성종의 외조부가 된, 세종 11년(1429) 당시 조선의 품계로 정3품에 해당하는 광록소경(光祿少卿) 한학(韓確)이 자기 어머니의 수신전(守信田)을 체수하고자 하자 나라에서는 종2품과로서 절급했다.⁶⁷⁾ 한학의 연로한 어머니는 세종 5년(1423)에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수신전이 한학의 아버지 사후에 그의 어머니가 과부의 자격으로 물려받은 전지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을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태종 7년(1407)년의 경우에서 본 바⁶⁸⁾ 어머니가 외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전지도 ‘수신’ 여부로 그 자격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즉 수신이란 남편의 전지와 관련한 자격일 뿐인데, 친정 부모와의 관계에도 적용된 것이다. 어쨌든 최고 권력층의 사대부인 한학의 사례는 수신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정(仁政)의 제도라고 하기에는 주저되는 감이 있다.

세조 8년(1462)에는 수신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처리 방안을 세웠고, 세조 11년(1465)에는 “수신전을 받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 처부모(妻父母)의 전지를 바꾸어 받은 뒤에 아내를 버린 자는, 논죄(論罪)”⁶⁹⁾하는 것으로 법령화되었다. 수신전은 세조 14년(1468) 이전에 이미 혁파되었다.⁷⁰⁾ 하지만 직전(職田)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성종 1년(1470년)과 성종 8년(1477년)에는 수신전을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논리는 수신전이 ‘절의(節義)’와 ‘염치(廉

66) 『태종실록』, 7년(1407) 12월 12일.

67) 『세종실록』, 11년(1429) 6월 8일. “戶曹啓, ‘光祿少卿韓確, 欲遞受母守信田, 請依賜米例, 以從三品科折給, 命依從二品給之’

68) 앞의 주 64번 참조.

69) 『세조실록』, 11년(1465) 12월 16일.

70) 『세조실록』, 14년(1468) 6월 14일. “수신전(守信田) · 흘양전(恤養田)이 다 직전(職田)이 되었으니….”

恥)’를 길러주어 풍속과 교화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수신전]은 남의 아내가 된 자에게 절개를 권장하는 것이니, 그 관계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백성들을 교화(敎化)하고 풍속을 이루는 방 도에 있어서 작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⁷¹⁾ “수신전·훌양전은 백성들로 하여금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염치(廉恥)를 힘쓰게 하는 것이니, 폐할 수 없습니다.⁷²⁾

성종 11년(1480)과 성종 22년(1491)에도 수신전 복원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리는 경제적 토대가 있어야 도덕(道德)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수신전이 없어 부인의 절의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은 부인의 절개는 의식(衣食)이 있고 없음과는 무관한 그 자체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수신전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⁷³⁾ 중종 10년(1515)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수신전은 조선의 공식적인 담론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모두 조종조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수신전은 더욱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아내로서 누가 신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또 조종조의 옛 법을 가볍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⁷⁴⁾

‘사대부의 아내로서 수절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는 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꾸준한 이념화와 제도화가 도달한 ‘성과’이다. 즉 거의 모든 양반

71) 『성종실록』, 32권, 4년 7월 30일.

72) 『성종실록』, 9년(1478) 8월 25일.

73) “의식(衣食)이 족한 연후에야 예의(禮義)를 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국초에는 수신전이 있어 절의(節義)를 양성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직전(職田)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 혹 재가(再嫁)합니다. 그런데 실행(失行)하였다 하여 자손을 서용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절의를 양성하는 도리입니까? 청진대 사사전(寺社田)을 혁파하고 직전을 감하여 수신전을 회복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열녀(烈女)는 두 자아비를 고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의식이 족한 것을 기다린 뒤에야 절개를 지키랴? 이것은 사사전을 혁파하고자 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하였다. 『성종실록』, 11년(1480) 5월 19일.

74) 『중종실록』, 10년(1515) 2월 22일.

여성은 ‘수신(守信)’의 가치를 이미 몸으로 내재화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수신전은 물론 그것을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수신전의 폐지는 과전의 축소와 직전의 확대라는 토지제도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기한 수신전 폐지의 논리는 일종의 레토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가 폐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수신전을 통해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즉 조선 초기의 현실에서 수신전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 수신전의 의미와 활용에서 『조선경국전』 및 『경제육전』의 시대, 그리고 『경국대전』의 시대가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관리 기제로 기능한 것이다.

V. 조선 초기 여성인식의 사상사적 의미

이 글은 성 범주의 사상체계를 성찰하고, 성 범주를 통해 새로운 사상을 만드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여성의 삶과 생각에 내재된 유학은 조선 초기 통치 전략의 일환인 부부와 남녀의 제도화를 통해 그 골격이 갖추어졌다. 조선 초기 유학의 여성인식은 제도와 법전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그 후의 여성인식을 주도하였다. 조선 초기 80여 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완성된’ 성 범주의 제도화, 그것의 사상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유학의 언어가 여성의 삶과 생각에 개입하여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부부는 인간 질서와 만물 생성의 근원이며, 그것은 하늘과 땅의 상징인 건곤(乾坤)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또 부인의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여자의 개가불가(改嫁不可)가 이론을 통해 합리화되었다.⁷⁵⁾ 이것의 지적 원천은 『시경』, 『역경』, 『예기』 등의 유교 경전이다. 조선 초기의 이러한 작업은 문명의 지식을 전수하고, 제도를 입안한 관학과 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조선 초기 유학은 남성 지배층이 구상하는 제도에 이론과 고증을 통해 그 보편타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75) 『세종실록』, 11년(1429) 9월 30일. “夫婦，人倫之本，萬化之源，《詩》始《關雎》，《易》基乾坤，其旨微矣。一與之齊，終身不改，有三從之道，無他適之義。一失其身，則行同禽獸，罪莫大焉。”

다음으로 조선 초기 성 범주의 제도화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두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즉 부부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정해졌고, 남녀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가 관리되었다. 부부관계는 가도(家道)의 서사와 삼강(三綱)의 담론을 통해 ‘부부정위(夫婦定位)’와 ‘부부위계(夫婦位階)’의 방식으로 제도화되었고, 남녀관계는 풍속의 담론과 인정(仁政)의 제도를 통해 ‘실행(失行)’이 정의되고 ‘수신(守信)’이 요구되었다. 조선 초기 성 범주의 제도화는 이후의 조선 사회가 추진한 바, 도덕에 의한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었다. 예컨대 부부위계적 질서를 자연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그 도덕적 의무가 당연시되었고, 남편의 종속된 자로서의 부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의 범주가 법령과 제도로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양한 이해(利害)의 대립과 갈등, 협상과 절충의 과정을 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의 단순한 적용이나 하나의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담론의 형성을 통해 법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과 권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 초기의 담론과 제도가 지향하는 바의 큰 흐름은 남성의 이익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조선의 다른 시기에 비해 여성들의 상소가 이 시기에 특히 많았던 것은 기준의 관습과 새로운 제도가 갈등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상소에는 재산권이나 윤리강상이나의 문제, 공리를 따를 것인지 명분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 등이 담겨 있다. 수신전의 예를 통해 본 바, 여성의 물적 토대가 점점 약화되면서, 성별 이데올로기는 강화되는 추세였다.⁷⁶⁾

조선 초기의 여성 인식은 조선의 현실이 유학의 이론을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성 범주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배 사상에서 성별이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합리화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이다.

76) 『세종실록』, 24년(1442) 7월 16일. “지금 세상에는 자식 없이 죽은 아내의 노비(奴婢)는 그의 남편이 그대로 부리다가, 다른 아내를 다시 맞이하게 되면 그 노비를 즉시 죽은 아내의 친정집에 돌려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남편의 죽은 아내는 남편이 비록 장가를 가더라도 부인이 개개(改嫁)한 것과는 달라서 의절(義絕)하는 도리가 없는 것인데, 노비를 친정집에 돌려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문헌

- 『周易』; 『近思錄』; 『조선왕조실록』(태조·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실록)
정도전, 『朝鮮徑國典』(上·下); 『삼봉집』. 서울: 솔출판사, 1997.
정도전, 『經濟文鑑』(上·下); 『삼봉집』. 서울: 솔출판사, 1997.
전봉덕, 『經濟六典拾遺』.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연세대 국학연구원, 『經濟六典輯錄』. 서울: 신서원, 1993.
朝鮮總督府中樞院(編), 『經國大典』. 서울: 조선총독부.

- 김홍경, 「15세기 정치 상황과 성리학의 흐름」. 『韓國儒學思想大系II: 哲學史想上』. 서울: 국학진흥원, 2005.
김홍경, 『관학파의 유학사상』. 서울: 한길사, 1992.
마르티나 도이힐러(저)/이훈상(옮김),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 아카넷, 2003.
오영교(편),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서울: 혜안, 2004
유향(저)/이숙인(옮김), 『列女傳』. 서울: 예문서원, 1996.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서울: 여이연, 2005.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편), 『韓國女性關係資料集:近世篇(法典上)』.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국, 1989.
정순우, 「한국 유학교육의 특징과 성격」. 『韓國儒學思想大系II: 教育思想』. 서울: 국학진흥원, 2006.
정호훈, 「조선전기 법전의 정비와 『경국대전』의 성립」.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서울: 혜안, 2004.
조은, 「가부장적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 조선전기 재산상속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6권 2호, 2000, 5~34쪽.
최홍기(등저),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아카넷, 2004.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국문요약

이 글은 성 범주가 한국의 지배 사상에서 어떻게 체계화되는가를 조선 초기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시기 성 범주의 제도화는

유학을 통한 사회통합의 일환이었다. 그것은 ‘부부’와 ‘남녀’가 합의하는 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두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부부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정해졌고, 남녀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가 관리되었다. 부부관계는 가도(家道)의 서사와 삼강(三綱)의 구도를 통해 ‘부부정위(夫婦定位)’와 ‘부부위계(夫婦位階)’의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남녀관계는 풍속의 담론과 인정(仁政)의 제도를 통해 여성의 ‘실행(失行)’이 정의되고 여성의 ‘수신(守信)’이 요구되었다.

조선 초기 성의 범주가 법령과 제도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양한 이해(利害)의 대립과 갈등, 협상과 결충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것은 『조선경국전』과 『경제육전』 및 그 속전들, 그리고 『경국대전』 등의 법전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볼 수 있다. 법전의 구상과 정립으로 구체화된 조선 초기의 여성 인식은 조선의 현실이 유학의 이론을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것이다. 여성 인식의 측면에서 본 조선 초기의 유학은 남성 지배층이 구상하는 제도에 이론과 고증을 통해 그 보편타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배 사상이 성별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합리화하는가를 볼 수 있다.

● 투고일 : 2008. 4. 10.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조선 초기(the Early Joseon), 유학(Confucianism) 여성인식(Knowledge of Women), 성별주(Gender), 성성(sexuality),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